



# 공업규격 나라마다 천차만별

## 제2무역장벽으로 대두

공업규격이 새로운  
수출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각국이 저마다  
독특한 공업 및 품질규격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도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고  
규격이 다른제품을 마구 수출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의 추세가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뀜에 따라 규격과 관련된 정보입수가 수출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중소전기용품 생산업체인 A사는 지난달 영국에 조명기구를 수출했으나 영국의 플러그가 국내형과는 달리 구멍이 3개인 것을 모르고 2개짜리 플러그가 부착된 제품을 선적했다가 이를 세관에서 바꾸는 소동을 벌였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강관을 수출한 D철강의 경우 강관규격변경사실을 몰라 현지업체로부터クレ임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가스렌지 제조업체인 R사는 현지 통용규격을 무시한채 프랑스로 가스렌지를 수출, 통관조차 못한 경우도 있었다.

무역회사인 S사는 최근 캐나다에 5백만달러어치의 가구를 수출하면서 캐나다의 표준규격과 다른 국내

형가구용 나사못을 보냈다가 배생해주는 곤욕을 치렀다.

유럽 14개국은 「의약품 제조에 관한 검사의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해 서로 교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하지 않아 국내 모상사가 인삼제품을 수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프랑스는 봉제완구를 수입할 경우 안전규격에 따라 완구의 부착물이나 완구부품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삼키거나 흡입할 수 없는 크기여야 하는데 국내 봉제완구 업계에서는 이를 모르고 수출했다가 세관에서 통관금지를 당한적도 있다.

이탈리아에 승강기부품 및 전기전자 부품을 수출할때는 수출업체가 국내의 KS마크와 유사한 IMQ 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획득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한 바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업체들이 FDA의 수입검사규정을 제대로 몰라 지난 '90년에 식품류·가전제품·의약품등 총 8백12건이 통관검사에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기업들은 세계각국의 규격장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교역상대국의 관련공업규격정보를 입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어 외국공업규격의 보급과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품의 80%이상이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수출이어서 외국의 주문자가 요구하는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외국규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활용할 경우 OEM방식 수출비용을 낮출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공업규격표준협회(K.S.A)가 1백여국의 13만여종의 외국규격을 입수, 각기업에 정보제공을 해주고 있다.

또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금성사, 대우자동차, 대림엔지니어링등 1백 18개 기업이 규격정보시스템을 도입, 규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자사제품생산에 반영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업표준협회 金永倍 상근부회장은 “국내기업이 자체기술개발을 하고 제품을 생산코자 할 경우 수출상대국의 관련규격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관련규격의 내용이 수출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제도시방서라는 의미이외에도 그나라 최고의 기술자 및 학계·연구소등의 우수두뇌들이 수년간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놓은 최고수준의 기술사항이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나라의 기술장벽에 걸려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안전정보

###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요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러나 전기기기는 제조가 잘못되면 감전이나 화재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시청이 어렵고 산업용 로봇이 오동작을 하는 등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제정·운영을 통하여 이러한 불량 전기용품의 제조와 판매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전기나 전기제품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도 안심하고 전기용품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각종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업진흥청에서는 전기용품을 그 위해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안전을 점검하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하기 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에 따른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업진흥청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의무, 자체검사의 실시 및 검사기록의 보존의무, ㉠자표시 등 필요한 표시를 할 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종전기용품의 수입판매업자도 제조업자와 똑같이 기술기준 적합의무 및 표시의무가 있으며 2종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업신고, 기술기준 적합의무, ㉡자마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